



제1719호
2024. 3. 29.(금)

◇ 발행인 : 종로구청장
◇ 편 집 : 홍보과
◇ 전 화 : 2148-1674

1.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2.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종로구보

◆ 공 고

- 제2024-415호 동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사업시행계획인가(안) 공람공고..... 2

공 람										

이 구보는 종로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.
(<http://www.jongno.go.kr>-행정정보-종로구보)

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(안) 공람공고

1. 우리 구 교남동 28번지 일대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, 그 밖에 본 정비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를 실시합니다.
2. 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람 기간 내에 우리 구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4. 3. 29.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가. 공람기간: 2024. 3. 29. ~ 2024. 4. 12.(15일)

나. 공람장소: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02-2148-2695)

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(수송동) 대림빌딩 9층

다. 공람내용

1) 정비사업 명칭: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
2)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) 위 치: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28번지 일대

나) 면 적: 6,835.7㎡(대지면적 5,883.7㎡, 정비기반시설 952.0㎡)

3) 정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) 성 명: 지엘돈의문디앤씨주식회사(대표 황세훈)

나) 주 소: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596, 2912호(논현동, 푸르지오시티)

4) 정비사업의 시행기간: 사업시행계획인가일 ~ 5년

5) 건축계획: 지하6층/지상21층, 연면적 69,908.25㎡, 공동주택, 업무시설, 근린생활시설

라. 관계도서: 게재 생략(공람장소 비치)

마. 의견서 제출방법: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로 제출. 끝.